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23-173

제출년월일: 2023. 11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번 호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안전시설 설치 등 조례를 일 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조항에 따른 내용 추가
- 나. 상위법 조항에 따른 조례 신설
- 다. 상위법에 따른 별표 제1호 위반사항 및 근거조항 번호 수정
- 라. 제명 및 별지 제2·3호 서식 띄어쓰기 수정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#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3, 11, 8,)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"을 "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비치와"를 "비치 및"으로, "유지하도록"을 "유지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"로 한다.

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"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
- 1.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
- 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"를 "공중화장실의 청결,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"로 한다. 제12조제1항 단서 중 "영 제8조제1항"을 "영 제8조"로 한다. 제19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제1호의 근거조항란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제2호의 근거조항란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호 제2호가. 위반사항란 가목 중 "제2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제2호나. 위반사항란 나목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호 제3호의 근 거조항란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제4호의 근거조항란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호 제4호의 근거조항란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호 제5호 근거조항란 중 "제2항"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"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"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	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
제4조(설치・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 장실 등을 설치・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・관리하여야 하 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	제4조(설치 • 관리자의 책무) 
제5조(설치기준) ① (생 략)	제5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법 제7조제4항에서 "안전관리

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

중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 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 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 여 지정할 수 있다. , <단서신설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・관리) 공 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・관리) --공중화장실의 청결,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----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구 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---

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

1.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

등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

2020.7.9.>

\_\_\_\_\_

#### ② (생 략)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삭 제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 <사 제>

>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【별표 제1호]

위 반 사 항	근거조	부 과 액		그	
T U / 8	ठेरे	1 차	2 차	3 차	
1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	법 제21 조 제1 항 제1호				
가. 제6조 공중화 장실 설치명령 불 응 나. 제10조 이동		20	40	60	
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10	20	30	
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준을 위반한 때	법 제21 조 제1 항 제2호				

#### 【별표 제1호]

의 반 사 항 	부 과 금 액
기 번 사 영   호	3   1 2 3   차 차 차
1. 공중화장실등의 법 조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항 제1.	
가. 제6조 공중화 장실 설치명령 불 응	20 40 60
나. 제10조 이동 화장실 설치명령	10 20 30
	제21 제2 호

가. 제11조 제2			
항의 표지부착 위	10	20	30
반			
나. 제11조 제4항			
설치・관리기준 위	20	30	40
반			
3. 개선명령을 이 법 제21 조 제1 행하지 아니한때 항			
행하지 아니한때 항			
제3호			
가. 제7조의 설			
치기준을 위반한	20	40	60
때			
나. 제8조의 관	10	00	20
리기준을 위반한	10	20	30
배 케이			
4. 보고등의 요구 법 제21 조 제1 에 불응한때 항	10	20	20
에 불응한때 항제4호	10	20	00
5 고조하지나트에서			
'' '' '' ' ' ' 법 세2I	5	10	20
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조 제2 항	υ	10	20
때   °			

7	가. 제11조 제4 항의 표지부착 위			10	20	30	
	반 나. 제11조 제5항						
	설치 • 관리기준 위 <u>마</u>			20	30	40	
	3. 개선명령을 이 생하지 아니한때	법 조 장 제3호	제2				
j	가. 제7조의 설 시기준을 위반한때			20	40	60	
ī	나. 제8조의 관 리기준을 위반한때			10	20	30	
	4. 보고등의 요구 세 불응한때	법 조 조 항 제4호	제2	10	20	30	
3	5. 공중화장실등에서 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	법조			10	20	

## [별지 제2호 서식]

유료화장실 [	] 처리기
신고서	간
	3일
□ 변경신고서	U 큰
신 상	
청호(명	

## [별지 제2호 서식]

유료화장실	처리기
신고서	간
□ 변경신고서	3일
신 상	
청호(명	

	칭 서 r										
	성도				생님	견윝	]				
ပုံ	대3				Ç	일					
	자 주	)									
		소									
						괻	리				
ス	자					주	-체				
섵	고 - -					Н					
「 言 っ っ	- 1 - 1		(-1)	=1 111	<u> </u>		설치	()			
현			(선	화번	호		년5	-			
힣	인 귀	<u>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별	<u>)</u> L ス	· :		m²,		お 7	<u>.</u> L <i>X</i>	<u>.</u>
			· '		•				화건	Š' ₹	兰
	,	모	면적	1:		m²		וי	대변	17	1
			대변기		수		소변기		위 T		ı
					장		수 		TT		
	시	설	남	여	애	샹	]   f	T	동	入	}
,	내	역	자	자		Ó,	j o	}	양	o,	<u>}</u>
入			용	용	인	용	-   -	3.	식	스	]
섵					용						
나				에	어		   7	<u></u>		벋	ŀ
Ó.			세	타	올	환	.   -	1 ·L	비		
	편	의	면	(폐	0]	환 풍	.   Z	3' .1	누	ਰ੍ਹ	
		설	   フ]	퍼	타	フ]	Ĺ	r <u> </u>	۵ -	ズ	Ė
	,	_		올	-)		ੀ ਜ	부	유두	7	٦
	1회		원								
ス	}용.	豆							-		
	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										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 고합니다.

신고인 : (날인 또

	÷11								
	칭) 성명(								
		생년월							
ဂ်	대표		일						
	자) 주				_				
	全								
	소								
	소				관	리			
	재				주				
入	ス				T.	^1			
설	관				,	d 51			
헍	리	(전호	하번	호	:	설치			
형	્રો		)		\	크도			
	인 규	부	) - 지	:		m²,	화건	상실	
	모	면적 :			m²				
		- ,		<u>۔</u>		변기	대변	변기	
		내년	대변기 수		2	수 广	유	형	
		1 1-	لہ	장	2,3	Ò			
	시 설	남	여	애	성	유	동	서	
   入	내 역	1	자	인	인	아	양	양	
소설		용	용	용	용	용	식	식	
나				0					
1 1			에	어		화		방	
9		세	타	올	환	기   장	비	o 향	
	편 의	면	(페	0	풍		누		
	시설	フ	퍼	타	7]	지		제	
	, =		올	-)		유두	유두	우두	
	1회					Ċ			
<sub>\lambda</sub>	<del>-</del> 용료	· 료	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 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 장실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 : (날인 또

는 서명)	
마포구청장 귀하	,
구비서류	수
1. 화장실 내부 평면도	수
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	豆豆
계획서	
3. 화장실 사용료 산출	없
내역서	음

는 서명)	
미모그런기 기의	
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	수
1. 화장실 내부 평면도	' 수
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	· 显
계획서	없
3. 화장실 사용료 산출	
내역서	음

【별지 제3호 서식]

【별지 제3호 서식]

제 호 유료화장실신고필증 제 호 유료화장실신고필증

	7	) }								
	호(	(명								
다	え	])								
표	ノ									
ス	Ę									
		- - -								
	2									
ڔٙ	관 :	리				(	(전화변	비方		
	인					,	CL-H i	<u>'</u> -I-		•
			) 대변기				소반]	대변기		
				수	장				유	형 
	시	ᅿ	남	여			ואו	유	동	서
시	'	설 역	자	자	0	.	성인	아	양	양
시 설	내	9	용	용	ą		용	용	식	식
내					<u>\$</u>	}_			'	
역										
				` `			에어티	 _오	환	풍
	편	의	세되	변시/	설	(	페이퍼	<u> </u>		
	시	설		대			대		대	
	1 ই	]								
人	- }용	•						원	<u> </u>	
			특기	豊 人	] [	<u> </u>	포구경	7중:	<u></u> 화장	·실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 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

ſ		ス	) 카								
		호(	(명								
	다	え	3)								
	끂	メ									
	지	명 주									
		소									
	관 리 인			(전화번호 : )							
	시 설 내 역		설역	<i>)</i> 대변기 수				소반기수		대변기 유형	
		시 내		남 자 용		지 아 인 용	]	성인 용	유 아 용	동 양 식	서 양 식
		편 시	의 설	세면시설 에어타올 환 풍 (페이퍼타올) 기							
				대			대			대	
	1회 사용료			원							
f	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정								-장		
	실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기 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							제16	16조 제		
								-장			
								구.			
										년	_
			월				Ó				
		П	1	丑	-	7		청	장	୍ପ	

##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u>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김태성			
연 락 처	02-3153-9234			